

(붙임2)

「한국은행 목포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5조(전략지원부문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한국은행 목포본부장은 <u>전체 한도 중 특별지원한도를 제외한 한도의 일부를</u> 지역별 경제사정,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⑥ 제5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%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 배정하며 신용등급은 <u>제6조 제5항</u>에 따른다.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⑦ (생략)</p>	<p>제5조(전략지원부문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한국은행 목포본부장은 지역별 경제사정, 금융기관의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<u>전체 한도의 40% 이상에서</u>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⑥ 제5항의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소진하여 전략지원부문 지원대상업체에 대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할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%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 배정하며 신용등급은 <u>제6조 제6항</u>에 따른다.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- 전략지원한도 운용규모 범위 설정</p> <p>- 항 번호 내림 반영</p>
<p>제6조(특별지원부문) ① 제4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 중 목포본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특별지원부문으로 지정하며 <u>한국은행 목포본부는 특별지원한도 배정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취급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>② 특별지원부문은 금융기관이 2021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p> <p>③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.(금융기관 대출취급기준 20억원)</p> <p>④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<u>제3항</u>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제6조(특별지원부문) ① 제4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업체 중 목포본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특별지원부문으로 <u>지정한다.</u></p> <p>② 한국은행 목포본부장은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를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한국은행 목포본부장은 제2항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 이내에서 <u>금융기관이</u>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금(만기 1년 이내의 원화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운전자금대출에 한정한다)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</p> <p>④ 특별지원부문은 업체당 10억원 이내로 배정한다.(금융기관 대출취급기준 20억원)</p> <p>⑤ 특별지원부문 업체당 최대배정가능액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<u>제4항</u>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- 불필요한 문구 삭제</p> <p>- 지역본부장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규모 설정 근거 신설</p> <p>-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 삭제</p> <p>- 항 번호 내림</p> <p>- 항 번호 내림</p>

현행	개정	비고
<p>⑤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「여성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」(B2512-2)에 따른 신용등급 1~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⑥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%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 배정한다.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3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⑥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「여성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」(B2512-2)에 따른 신용등급 1~3등급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⑦ 특별지원한도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가 특별지원한도 총 운용규모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한도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청에 따라 해당 대출실적에 대하여 50% 이내로 일반지원한도를 비례 배정한다.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는 제4항을 적용하고 배정액은 지원대상 대출실적의 50%를 초과할 수 없다.</p>	<p>- 항 번호 내림</p> <p>- 항 번호 내림</p>
<p>제7조(일반지원부문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제6조 제5항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.</p> <p>⑦ 제5조 제2항 및 제3항,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.</p>	<p>제7조(일반지원부문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제6조 제6항은 일반지원한도의 배정에도 적용한다.</p> <p>⑦ 제5조 제2항 및 제3항, 제6조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배정한 후 미소진한도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별 배정액의 구성비에 따라 재배정한다.</p>	<p>- 항 번호 내림 반영</p> <p>- 항 번호 내림 반영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 <2023. 8. 30.></u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5항의 기준 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경과조치)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</p>	<p>- 부칙 신설</p> <p>- 시행일 명시</p> <p>- 경과조치 마련</p>